

83. 1. 1 시지

지점 2230 - 115호 (92.11.9) 비지

무 지 개 후 지

TY FH TH FO TY

무 지 개 보 형

1. 보험의 세목

가. 주보험

개인형 : 1종(4배형) , 2종(6배형) , 3종(8배형) , 4종 (10배형)
5종 (20배형) , 6종 (30배형)
부분형 : 1종(4배형) , 2종(6배형) , 3종(8배형) , 4종 (10배형)
5종 (20배형) , 6종 (30배형)

2. 가입연령

10년, 20년만기 : 18세~70세
60세만기 : 18세~57세

3. 보험기간

10년, 20년, 60세만기

4. 보험료 납입기간

영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5. 부가하는 특약

정기특약, 유족연금특약, 암특약, 성인병특약, 재해관련특약, 단체취급특약
표준미납체특약, 연금전환특약, 신용카드이용보험포납입특약

百 五 十 五 十 五 十 五

(附 錄 一)

7

서지사항

(제2호)

4

무지개보형 (개인형)

보물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

루어진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

간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간진단

을 받은 때로부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

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불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

제4조 【대표자의 지정】

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을 반환한다. 다만, 계약자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5일이내에 그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① 회사가 제1회 보증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5일이내에 그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제3조 【계약물성립시의 보증금의 반환】

회사는 모든 안내자(이하 "안내자"라 함)의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을 회수에 대한 보증금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제2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증금내장 등의 효력】

⑤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등급분류표"라 함) 중 제1급의 장해로 인한 보증금 또는 만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한 기전에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증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원한을 제기한 경우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금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함 니다)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 제1급 장해보험금여금을 지급
 4.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금여금을 지급

- 제5조 【계약의 무효】
-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③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하역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 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이상인 경우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표중 제 2급 또는 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 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장해등급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등급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 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 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3호, 제 4호 또는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⑥ 제 1항 제 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중복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수 령자에게 드립니다.
-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원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만을 드립니다.
- ⑦ 제 6항에 규정된 장해등급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수익자에게 드 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등급을 지급받은 동원부위에 가중 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운 장해로 인정하는 장해등급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등급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 ⑧ 제 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원부위에 또 다시 제 7항에 규정 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 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등급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7항 후단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

환금금을 드립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금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채
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금표준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니다.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제 7 조 【배당금의 지급】

금한도는 동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⑨ 제 6항 및 제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 제 4호의 장해금여금의 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금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금여금의 지급 사유가 해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금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경우(정약사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5. 모친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정약사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적임 또는 자중은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는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때
못하였을 때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금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포 함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정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정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제10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하
입니다.

영려야 합니다.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제13조 【주소 변경통지】

이를 회사에 영려야 합니다.

수익자는 제 6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다.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금방법에 따라 납입기간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

증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

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양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인단, 약률복응를 수단으로 진단청차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

제10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표를 통려드립니다.

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

- 다.
-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월이 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 ⑤ 제 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제15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 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 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 기예금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 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조 제 3항, 제 2조, 제 3조 및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제17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6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함

다.

클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제19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금을 드립니다.

래에 항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 금액금 또는 해약환급

계약자가 이를 신청한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장

⑤ 계약자가 제 1항 제 5호중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 1항 제 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그 보험증서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5. 기타 계약의 내용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1. 보험증서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함(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문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인·직원, 모친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제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1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납입일의 다음년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한도내에서 그 지금을 보장합니다.

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

제25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별표)

해양수산부 예산서표

기준
보통가임금액 : 10만원
가임연령 : 40세
남임비율 : 전가임남

(단위)

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층	남임보형포	4,182	8,364	25,092	41,820	83,640	-	-
	환문문	229	3,458	17,617	34,244	83,640	-	-
	20년	남임보형포	2,484	4,968	14,904	24,840	49,680	74,520
	20년	환문문	0	337	7,483	15,904	37,702	64,350
	60세	남임보형포	2,484	4,968	14,904	24,840	49,680	74,520
	60년	환문문	0	337	7,483	15,904	37,702	64,350
4층	남임보형포	4,812	9,624	28,872	48,120	96,240	-	-
	환문문	659	4,318	20,401	39,278	96,240	-	-
	20년	남임보형포	2,796	5,592	16,776	27,960	55,920	83,880
	20년	환문문	0	613	8,300	17,353	41,275	71,263
	60세	남임보형포	2,796	5,592	16,776	27,960	55,920	83,880
	60년	환문문	0	613	8,300	17,353	41,275	71,263
10층	남임보형포	2,796	5,592	16,776	27,960	55,920	83,880	111,840
	환문문	0	613	8,300	17,353	41,275	71,263	111,840
	20년	남임보형포	2,796	5,592	16,776	27,960	55,920	83,880
	20년	환문문	0	613	8,300	17,353	41,275	71,263
	60세	남임보형포	2,796	5,592	16,776	27,960	55,920	83,880
	60년	환문문	0	613	8,300	17,353	41,275	71,263

(별표)

재무회계예산서표

(여자)

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층	10년	단임보합표	2,610	5,220	15,660	26,100	52,200	-
	과금	0	1,112	10,189	21,071	52,200	-	-
	20년	단임보합표	1,410	2,820	8,460	14,100	28,200	56,400
	과금	0	0	3,213	8,479	21,152	36,474	56,400
	60세	단임보합표	1,410	2,820	8,460	14,100	28,200	56,400
	과금	0	0	3,213	8,479	21,152	36,474	56,400
1층	10년	단임보합표	2,850	5,700	17,100	28,500	57,000	-
	과금	0	1,461	11,281	23,029	57,000	-	-
	20년	단임보합표	1,530	3,060	9,180	15,300	30,600	61,200
	과금	0	0	3,555	9,093	22,652	39,282	61,200
	60세	단임보합표	1,530	3,060	9,180	15,300	30,600	61,200
	과금	0	0	3,555	9,093	22,652	39,282	61,200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문 여 명	지 금 사 유	지 금 규 약
만기금여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1호)	만기에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장해보험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2호)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배액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제 1급 장해보험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3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배액 2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배액 3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8배액 4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배액 5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배액 6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배액

분 여 명	지 분 사 용	지 분 금 액
장해금여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4호) 원인으로 장해분 류표준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2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 3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 4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 5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 6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재 해 문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제척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직업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 30호, 1979. 1. 1시행) 중 “근상 및 중독의 외부요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하 목

분 류 하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군용차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60 - E 869

분 류 방 면 호	분 류 하 목
E 870 - E 876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단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80 - E 888	11. 물의의 추락
E 890 - E 899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물의의 사고
E 900 - E 90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물의의 사고
(276.5)	다만, 급격한 액체순위로 인한 타수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4. 익수, 침식 및 이물에 의한 물의의 사고
E 916 - E 928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제외한다.
(E 927)	15. 기타 물의의 사고
E 930 - E 949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60 - E 969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70 - E 978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78)	18. 법적개입
E 980 - E 989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90 - E 999	19. 물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21.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된 질병

장해 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또는 씬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근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근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근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근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근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근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수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근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응 급	신 체 장 해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 손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제 6 급
		1.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의 사출하였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출하였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의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출하였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출하였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출하였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출하였을 때

(장해등급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임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임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발 또는 발가락은 기능을 잃은 것"

가. "발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발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모, 바, 프), 지혈음 (나, 다, 레), 구개음 (자, 자), 후두음 (오, 아)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침이증으로서 음성인이에 의한 의사의 소물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10. "판다리를 완전연구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판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없는 것을 말하며, 판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판다리 각각의 3대 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분만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연구의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판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판다리 각각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인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물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굴하기, 좌우굴하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인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팔에서 첫째관절 (지절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팔에서 둘째관절 (근위지절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연구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팔에서 첫째관절 (원위지절관절) [첫째손가락은 팔에서 첫째마디 (말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팔에서 마지막관절 (중수지절관절) 또는 팔에서 둘째관절

15.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 편에 대하여는 이계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손 또는 팔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손 또는 두 팔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 가. "발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근위지절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무지개보림(부부림)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년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부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물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칙】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및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인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계약의 효력】

그런데 이 회가 서약서에 제1회 모회료를 받고 청약을 응낙한 경우에는 제1회 모회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회비납부서”, “회비납부증”, “회비납부영수증” 또는 “회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행”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개시일로부터 이 약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책임을 진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명 또는 직성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여 보험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채택한 양심의 대립을 지적하고 있다.

⑤ 주피모형자 및 중피모형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전하는 “자해
음분공발표” (이하 “자해공발표”라 합니다) 중 제 1급의 자해사태가 되었
을 때, 주피모형자가 사망하거나 자해공발표 중 제 1급의 자해사태가 된 후
중피모형자가 주피모형자의 후적을 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쳐된 때에
는 이 계약은 다이아몬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문화는 자(이)의 “문화인”이라 하거나(가)가 문화인으로서(이)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내용으로 하여금 문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4조 【계약물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월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부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만기금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재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재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재해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재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재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제 1급재해보험금을 지급

4.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재해분류표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금여금을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재해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 3급의 재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전 부기권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재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재해 또는 재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재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재해 또는 재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3호, 제 4호 또는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제 1항 제 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을 수익자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발생표준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리거나 기타 이 계약

제8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로 합니다. ③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장해발생표준의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금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금여금의 지급 사유가 해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를 적용합니다. 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금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원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급한 장해금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 규정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이에 해당되는 장해금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금여금을 지급받은 동원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운 장해로 장해에 해당되는 장해금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금여금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를 적용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을 할 수 없음(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있어 청문한 사항에 대하여 하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준에
종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함
입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시며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를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
드립니다.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살을 해침으로써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채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해친 경우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잔단 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인단, 약률복응을 수단으로 잔단청자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부정한 사기의사(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사)이내(사)가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사)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경우에는 그 조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표를 틀려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칠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잔단계약의 경우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사)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못하였을 때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금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납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통이행 또는 은행수납통지서의 미교부 또는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① 제2항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기간이라 하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함은 납입하지를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 계약은 다시 효력을

제15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려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란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란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주소 변경통지】

수익자는 제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① 제2항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간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

⑤ 회사는 만기금여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그 다음날로부터 3월

(별표 "해약환급금 표시표" 참조)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7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에 미납된 보험료가

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드립니다.

간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필요한 때에는 전수후 10일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리거나,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에 조사나 확인이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서류를 전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① 회사는 제 17조에 정한 서류를 전수한 때에는 전수증을 교부하고, 그

제18조 【보험금등의 지급】

여 제출하는 서류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3. 보험증권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자해진단서 등)

1. 청구서(회사양식)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제17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조 제 3항, 제 3조, 제 4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④ 계약자가 제1항 제 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향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증서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5. 기타 계약의 내용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1. 보험증서

이 경우 증서를 서면으로 함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증서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대하여 정기에금이용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8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 정한 바에 따라 제 7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제19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용을 연단위 ⑥ 만기금여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 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함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인·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22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연체하지 상환
대출금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22조 【약관대출】

다.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론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
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납입일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연체하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합니다.

②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
다.

① 주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분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

제20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금을 드립니다.

래에 항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 금여금 또는 해약환급
계약자가 이를 신청한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장
⑤ 계약자가 제 1항 제 5호중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문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문쟁이 있는 경우 문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26조 【보험보증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피상응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